

정책제언

재정투입, 무상교육, 이민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돌파한다

윤현철 | KOTRA 독일 함부르크무역관장

EU의 맹주이자 세계 4대 부자나라인 독일은 70여 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800만 명이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했고, 특히 군인으로 징집된 젊은 남성이 많이 사망하면서 산업인력 부족을 겪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저출산의 경험을 하고 있어 일찍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슬픈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이를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직시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과 다수 국민의 공감으로 독일은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왔다. 하지만 목표로 하는 출산율 2%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외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없다면 독일은 이미 2014년부터 매년 20만~30만여 명의 인구가 줄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독일 인구는 2014년 8,010만 명에서 2017년 말 8,270만 명, 2022년 2월 기준 8,32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정책을 지난 수십 년간 확대해 왔다.

연간 300조 원에 가까운 아동수당 및 교육 예산… 국가발전과 국민 미래 위한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 형성돼

첫째, 재정투입을 통한 저출산 대책이다. 저출산에 허덕이던 독일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미 재정투입을 통한 저출산 대책을 강구했다.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길게는 그 아이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약 219유로(약 30만 원 상당)를 지급한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월 219유로, 셋째부터는 225유로, 넷째부터는 250유로를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받는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돼 매년 인상된다. 아이가 세 명인 가정은 월 663유로(약 90만 원)의 보조금을 매월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다.

부모보조금(Elterngeld)이란 것도 있다.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부모가 최대 14개월간 세후 월급의 65%를 출산휴가 중에 받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통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아빠는 두 달, 엄마는 1년 신청한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육아 세금공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세금이 높아지는 세제 혜택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만 유로이고 아이가 한 명인 가정은 세금에서 1,800유로 정도가 공제되는 반면, 연봉 12만 유로의 고소득 가정은 약 3천 유로가 공제되는 것이다. 아이가 셋인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크다. 연소득 4만 유로의 가정은 4,600유로 정도를 공제받는 데 비해 12만 유로의 고소득 가정은 9천 유로까지 공제받는다.

독일 정부는 왜 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추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것일까? 필자는 이를 시장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다산 장려 수단으로 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독일 정부는 가난한 가정에는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아동수당과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고소득 가정에도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공제금액이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 지원금으로 다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 논리로 다산이 유리한지 무자식이 유리한지를 국민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는 제도로, 독일다운 합리적 시스템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 비용이 출산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일에는 학비가 없다.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일체 무료다. 한동안 독일 정부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비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법에 저촉돼 그렇게 하지 못했다. 또한 독일엔 학원이나 과외가 거의 없다. 독일에서 과외(Privatunterricht)란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극소수의 아이들이 받는 것이다. 소위 과외를 받는 경우는 외국인 자녀들이 독일어를 배우거나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 레슨을 받는 등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에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 교육하지만, 국가는 이를 책임진다’라는 말이 있다. 독일은 19세기에 이미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했고 1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경제적·정치적 최대 혼란기였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도 학비면제를 국가정책으로 확정했다. 독일이 이렇게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투자해야 한다는 합의가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뤄진 결과라고 본다.

지속가능발전 위한 경제적 선택, 난민수용 정책에도 반영

셋째,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한 생산인력 확보다. 2015년 당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중동 난민사태를 맞아 중대한 발표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Wir schaffen das)’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을 무제한 수용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왜 메르켈 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펼쳤을까? 필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바라본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산업인력이 줄어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악화돼 선순환 고리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난민과 경제 위기를 겪은 남유럽인들을 독일 사회에 통합해 지속적으로 생산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독일이 난민을 수용하면서 과거의 악행에서 벗어나 평화의 상징국가로 거듭나려는 독일 정부와 메르켈 총리의 인도적인 입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독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선택이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에 반영된 부분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근세에 독일은 이미 프로이센 왕국 시절 프랑스 등지의 기독교인 수십만 명을 적극적으로 통합·수용한 바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위한 수십만 명의 터키 노동자 이민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이들을 융화한 바 있기에 이민정책에 대한 독일 사회의 반응 역시 소수의 극우주의자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이와 같은 노력에도 2020년 기준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3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1.3명에 머물던 출산율이 지속적인 출산정책과 세제지원으로 2018년 1.57명으로 8년째 늘었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불과한 한국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독일에서 아동수당으로 지출된 재정은 2020년 기준 한 해 456억 유로(62조 원)에 달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의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예산은 1,586억 유로(214조 원)다. 두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만 1년에 300조 원에 가깝다. 이는 연간 독일 GDP의 6.2%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600조 원으로 봤을 때 그 절반 정도를 매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규모지만 독일 정부와 대부분의 국민은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해 이러한 막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제조업과 무역에 의존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과 독일, 두 나라의 20~30년 뒤 모습은 미래를 위한 투자 양상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출처: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칼럼(윤현철KOTRA독일 함부르크무역관장)

정부동향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혁신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 2022년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 배포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방식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인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 이번 배포하는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2021년 제 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벤치마킹)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포지티브(先 규제-後 허용) 방식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네거티브(先 허용-後 규제) 방식 전환으로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 2021년에는 15개 시·도에서 894건의 자체법규 개선안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소관부처의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 개선 필요과제 705건을 선정하고 563건에 대해 제 개정을 완료하였다.
 - ※ ('19년) 515건 → 307건 개선, ('20년) 626건 → 478건 개선
- 이번 참고 조례안에는 지역산업 활성화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 불편을 개선하는 등 타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사례가 수록되었다.
 -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참고 조례안]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전북 무주군·임실군/경북 경주시)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완화(인천 부평구)
- 농특산물 가공식품 범위 확대(경기 김포시)
- 도서민 차량 도선운임 지원확대(전남 여수시)
- 경력단절여성 범위 확대(충북 진천군)

(전북 무주군·임실군/경북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기존 허가가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사업 중 가스용품제조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은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자본금 보유 여부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함

개선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자본금 규정* 삭제로 액화석유가스사업 창업을 시장진입 장벽을 낮춤 * (가스용품 제조사업) 자본금 3억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자본금 3억원(법인 5억원)

* 개정 규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 김포시) 농특산물 가공식품 범위 확대

기존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 또는 전통식품으로서 김포시장이 인증한 제품만 김포시 농특산물로 인정 → 타 시·도의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특산물”에서 제외하여 지원 불가

개선 쌀을 제외한 원료가 국내산인 경우,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도 김포시 농특산물에 포함시켜 시장이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 규정: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

(전남 여수시) 도서민 차량에 대한 도선운임 지원확대

기존 도서민이 이용하는 차량(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서민 지분이 100 퍼센트인 차량)은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도선 운임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주민 지원

개선 도서민에게 도선 운임 및 도서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도선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 규정: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충북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범위 확대

기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돕고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혼인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지원요건인 경력단절 사유에 임신, 출산, 육아에 더불어 혼인까지 범위 확대
* 개정 규정: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2조

행정안전부

경북·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총력 지원

- 자원봉사 독려, 예비비·재난기금 활용, 공유재산 특례, 지방세 감면, 금융 지원 등 -

- 행정안전부는 경북·강원도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이외에도 피해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 3월 10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여 피해복구 및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행정 분야]

- 먼저, 경북·강원 지역의 화재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조속 배치하고, 지원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 산불진화 보조, 급식조리·배식, 후원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 (3월 9일 기준 자원봉사인력 현황) 울진 3,678명, 강원 2,776명 지원 중

[지방재정 분야]

- 먼저,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교부되면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특히,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구호 물품 조달 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찰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 아울러 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완화하고,
 - 지역 주민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산불 피해로 인해 실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제 분야]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방안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산불로 인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 간(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 (예시)취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당초)4월말→(연장)10월말
 -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체납자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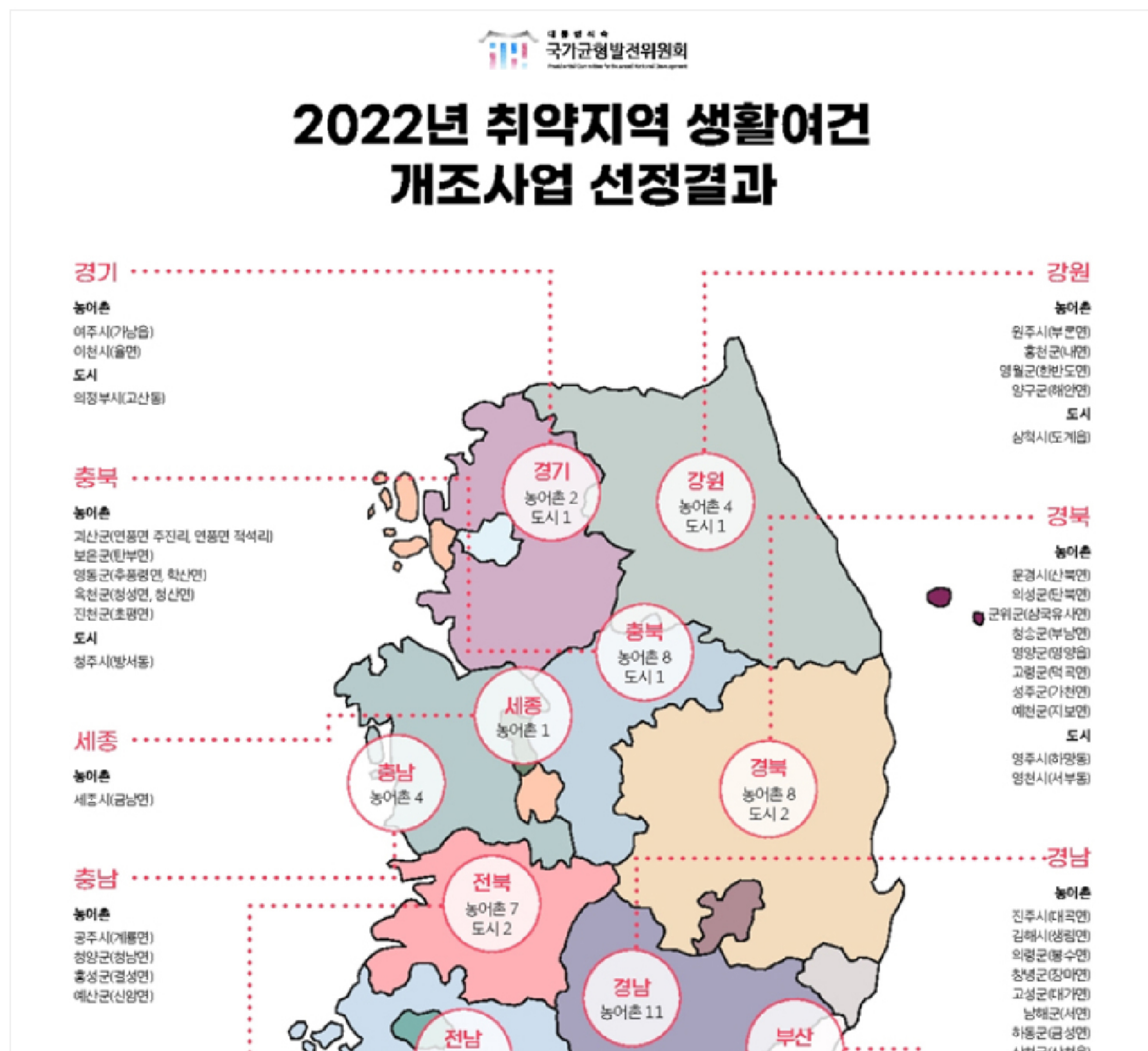
-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 정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발행비용(0.7%)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 (선정 지자체별 각 1억씩 지원)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물 피해 지역 내의 새마을금고(지역금고)는 5월 7일(월)까지 2개월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 내외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한편, 대출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 지방공기업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응어

전북

농어촌

군산시(서수면)
김제시(봉남면)
진안군(정선면)
임실군(강진면, 덕치면)
순창군(유등면)
부안군(하서면)

도시

군산시(선양동)
남원시(운봉읍)



산청군(산청읍)
함양군(백전면, 아성면)
함안군(칠서면)

부산

도시

서구(남부민동)

전남

농어촌

순천시(황전면) / 광양시(전상면) / 담양군(창평면) / 곡성군(석곡면)
보성군(경백면) / 화순군(아양면) / 강진군(명량면) / 해남군(옥천면)
영광군(상호읍) / 함평군(월아면) / 영광군(내월면) / 진도군(군내면) / 신안군(압해읍)

도시

강진군(강진읍) / 함평군(함평읍)

농어촌 - 58개소

도시 - 10개소

정책브리프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과 주거인식

박미선 | 주거정책 연구센터장외

1. 2030 미혼 청년조사개요

(조사목적)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파악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중인 2030 미혼청년의 주거상황과 현재 주거정책 인식을 조사

-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3,009명을 조사(연령대별 인구, 지역분포, 혼인상태에 따라 할당)
- 조사는 2021년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컴퓨터를 활용한 웹·모바일 조사를 통해 진행

(일반특성) 미혼 청년의 약 2/3는 부모와 함께 살며, 독립 청년의 약 60%는 직장인

만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의 65.8%는 현재 부모와 동거 중이며, 이들 중 20~24세 38.4%, 25~29세 35.0%로 대부분 20대임

[표 1] 청년 연령대별 부모 동거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대별					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부모 동거	65.8	38.4 (78.2)	35.0 (66.3)	16.7 (54.9)	9.9 (50.2)	100.0	
부모 독립	34.2	20.6 (21.8)	34.1 (33.7)	26.4 (45.1)	18.9 (49.8)	100.0	
계	100.0	32.4 (100.0)	34.7 (100.0)	20.0 (100.0)	12.9 (100.0)	100.0	

주: 2030 미혼 청년 3,009명을 대상으로 함.

부모 동거 미혼 청년의 현재 상태는 직장인 (36.9%) > 학생(33.4%) > 취준생·수험생(16.2%)등이었으며, 부모 독립 미혼 청년의 대부분은 직장인(59.6%)이었고, 학생(18.1%), 취준생·수험생(9.0%)등임

[표 2] 부모 동거 여부별 청년의 상태

(단위: %)

구분	학생	취준생·수험생	직장인(풀타임)	파트타임	자영업자	기타	계
부모 동거	33.4	16.2	36.9	8.9	2.6	2.0	100.0
부모 독립	18.1	9.0	59.6	7.6	4.4	1.2	100.0
계	28.2	13.8	44.7	8.4	3.2	1.7	100.0

주: 2030 미혼 청년 3,009명을 대상으로 함.

2030 미혼 청년의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고, 부모 동거 청년의 상당수(43.2%)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으며, 부모 독립 청년은 200~250만 원 미만이 23.2%로 가장 많은 비율

[표 3] 소득수준

(단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250만 원 미만	250~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계
부모 동거	43.2	18.8	15.1	9.2	13.6	100.0
부모 독립	21.4	18.4	23.2	14.9	22.2	100.0
계	35.8	18.7	17.9	11.2	16.6	100.0

주: 2030 미혼 청년 3,009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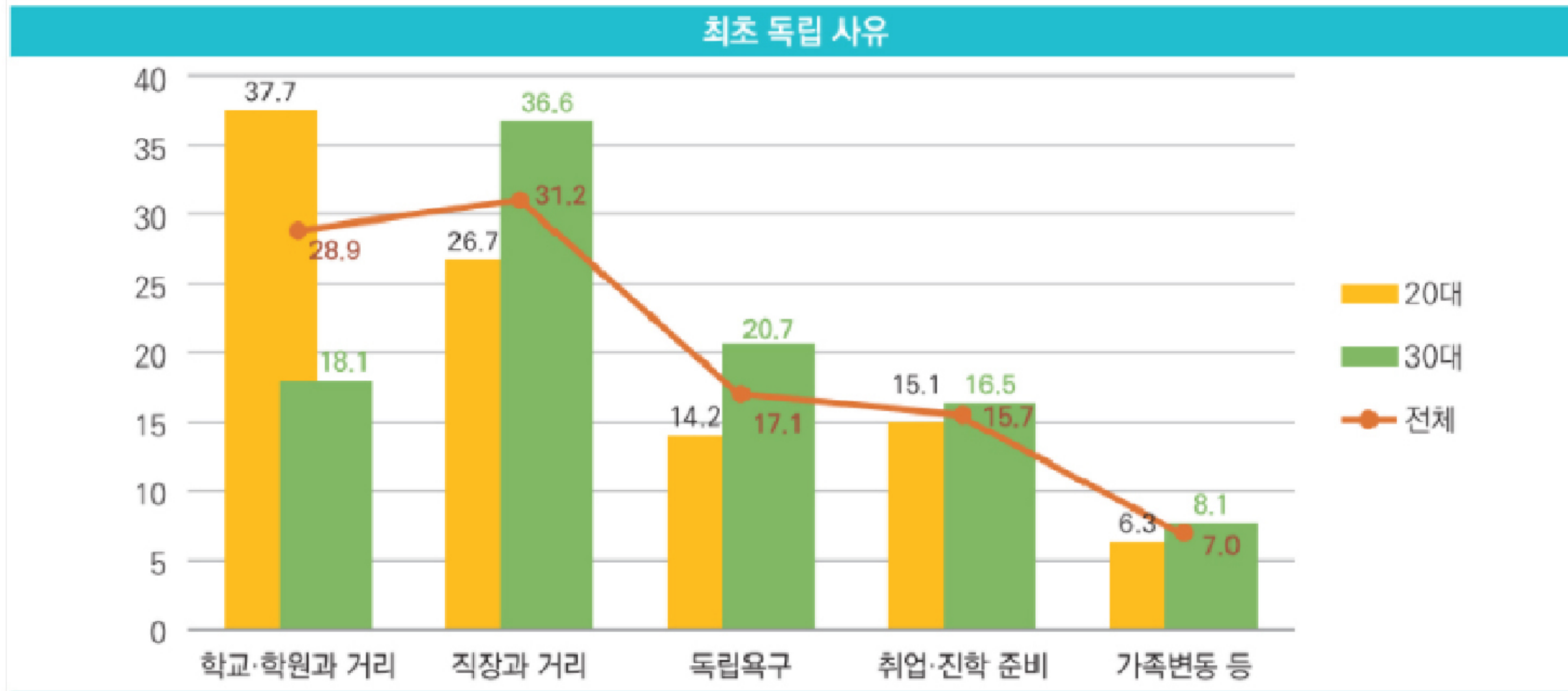
2. 부모독립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

독립 사유는 '직장 및 학교·학원과의 거리', 첫 독립은 평균 23.5세에 실행

부모로부터 최초 독립은 직장과의 거리(31.2%), 학교·학원과의 거리(28.9%) 때문이나 연령대별 차이 존재

- (20대 미혼 청년: 통학 목적이 가장우세) 학교·학원과의 거리(37.7%) > 직장과의 거리 (26.7%) > 취업·진학 등 준비 (15.1%) > 독립하여 혼자 살고 싶어서(14.2%)순

• [그림 1] 최초 독립 사유



주: 부모 독립 2030 미혼 청년 1,029명을 대상으로 함.

부모 독립 미혼 청년은 주로 아파트 이외(74.7%), 보증부월세(43.8%)로 거주

2030 미혼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36.5%) > 아파트(25.3%) > 오피스텔(17.5%) 단독주택(15.2%)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 주택유형

구분	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계
부모 독립	15.2	36.5	25.3	17.5	5.5	100.0
20대	16.1	37.4	21.1	18.0	7.4	100.0
30대	14.0	35.3	30.4	17.0	3.3	100.0

주1: 기타는 고시원, 기숙사, 쪽방 등이 포함.
주2: 부모 독립 2030 미혼 청년 1,029명을 대상으로 함.

2030 미혼 청년 점유형태는 보증부월세가 우세하나, 30대가 될수록 전세 비중 상승

- 20대 미혼 청년은 보증부 월세 거주가 거의 절반(48.2%)이나, 30대의 경우 보증부월세(38.6%)와 전세 (36.5%)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

• [표 5] 점유형태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계
부모 독립	14.6	31.1	43.8	5.8	4.6	100.0
20대	13.1	26.7	48.2	7.5	4.5	100.0
30대	16.4	36.5	38.6	3.8	4.7	100.0

주: 부모 독립 2030 미혼 청년 1,029명을 대상으로 함.

미혼 청년 20대의 절반, 30대의 30%는 부모 지원을 받고 독립

부모에게서 독립한 미혼 청년 중 경제적 지원을 받은 청년은 42.1% : 20대 51.1%, 30대 31.2%

부모에게서 받은 경제적 지원은 임차보증금(60.5%) > 초기 월세(19.2%) > 자가주택 구입 자금(16.2%) 순

- 20대 미혼 청년의 절반 이상(51.1%)은 현재 주택 마련 시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그중 보증금 지원이 60.0%, 초기월세 지원이 22.7%로 대체로 보증금 마련 시 부모 지원받고 독립

- 부모 지원을 받은 30대 미혼 청년도 보증금 지원이 6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자가주택 구입비용 지원도 24.5%로 부모 지원이 있는 미혼 30대의 1/4 수준

• [표 6] 부모 지원 여부 및 지원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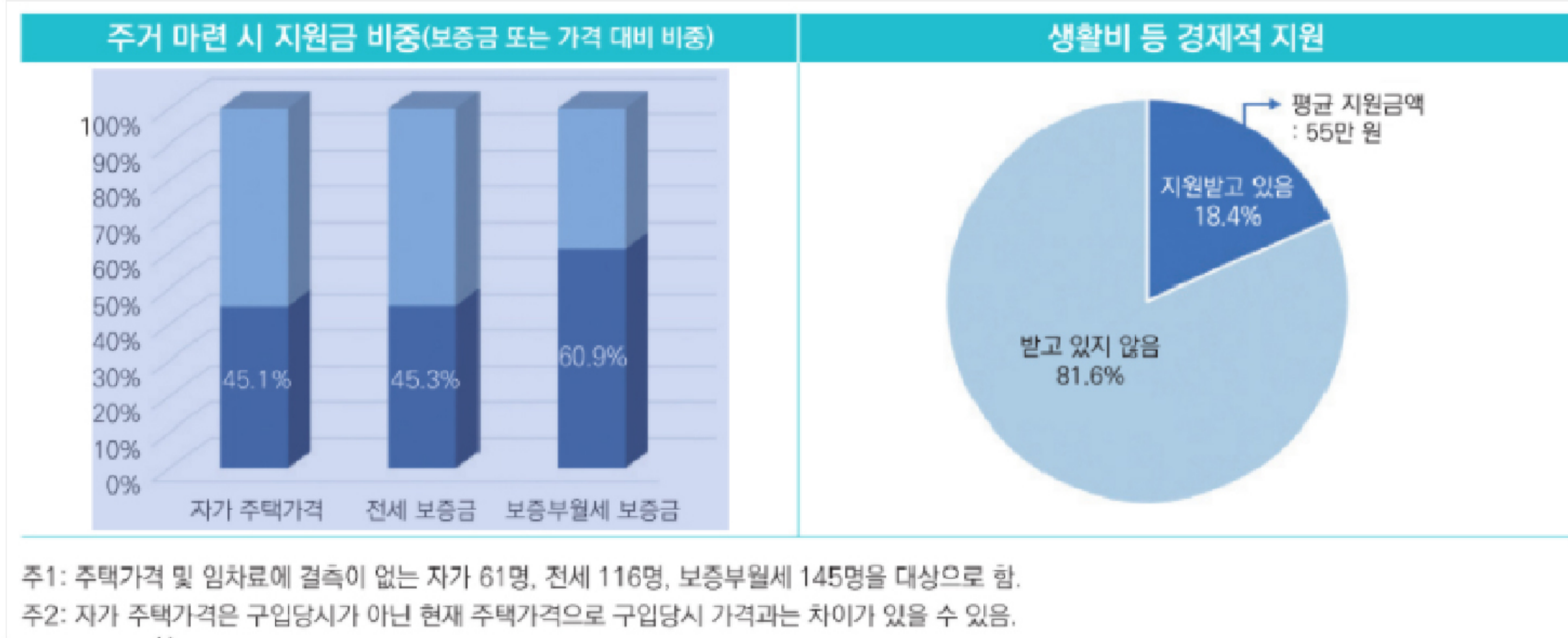
구분	부모 지원 없음	부모 지원 있음						계
		구입자금	보증금&월세	임차보증금만	초기월세만	기타	소계	
부모 독립	57.9	42.1	16.2	0.3	60.5	19.2	3.8	100.0
20대	48.9	51.1	12.1	0.5	60.0	22.7	4.7	100.0
30대	68.8	31.2	24.5	-	61.3	12.3	2.0	100.0

주: 부모 독립 2030 미혼 청년 1,029명을 대상으로 함.

(주택 지원금)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보증부월세 보증금의 60.9%, 전세보증금의 45.3%, 자가주택 가격의 45.1%로 조사됨

(생활비 지원) 부모에게서 독립한 2030 미혼 청년 중 부모로부터 생활비나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18.4%, 월평균 지원금액은 55만원 수준임

• [그림 2]



3.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인식

무주택 미혼 청년 중 77.0%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

2030 미혼 청년 중 14.5%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고, 무주택 미혼 청년의 77.0%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한다고 인식

- 주택 구입 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때의 자가소유 필요성(81.3%)이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74.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표 7] 주택보유 의식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단위: %)

구분	기대함 / 기대 안 함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비중)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함	81.3	18.7	100.0	(34.7)
	기대 안 함	74.6	25.4	100.0	(65.3)
계		77.0	23.0	100.0	

주: 무주택 청년 2,573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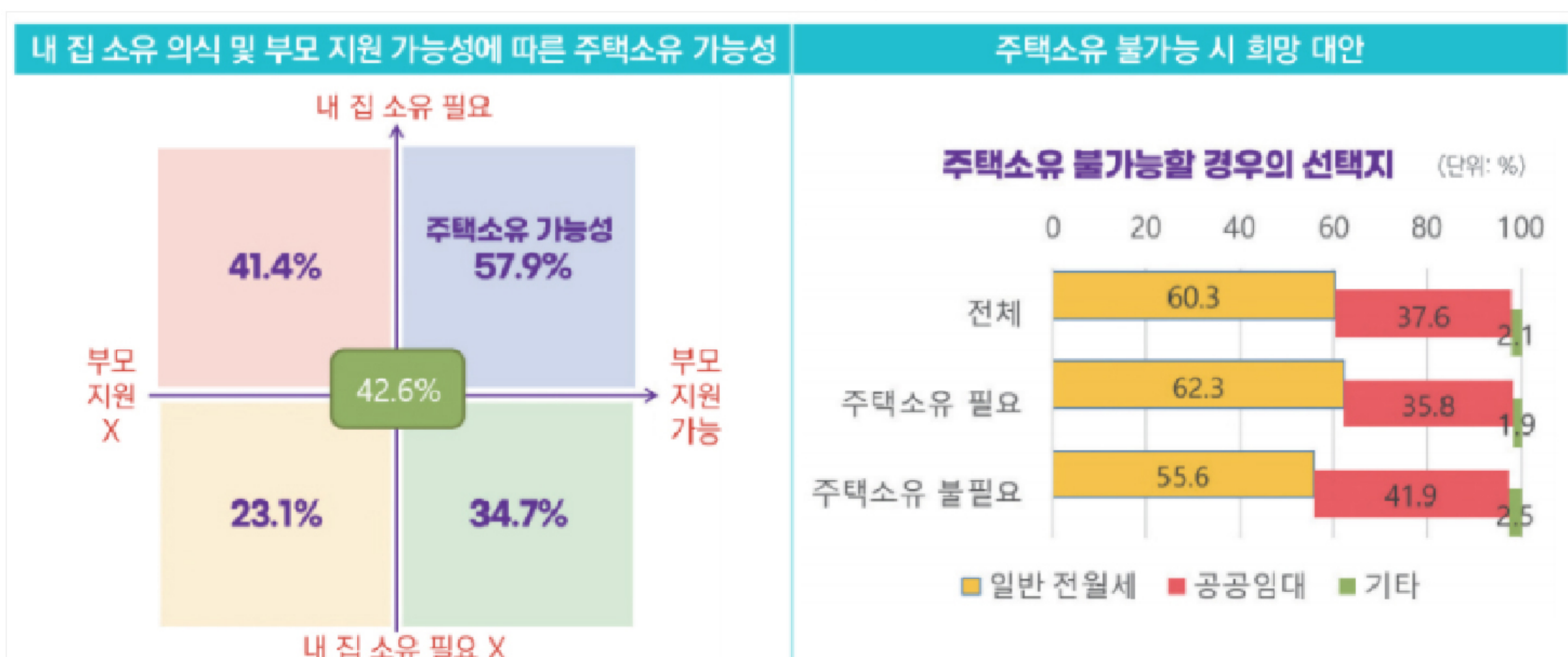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을 고려했을 때, 무주택 미혼 청년의 42.6%는 향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57.9%)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41.4%)에 비해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

향후 10년 내 주택소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 전월세로 거주한다는 응답이 60.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37.6%

-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청년은 일반 전월세를 더 많이 선택, 주택소유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많이 고려

• [그림 3]



주: 무주택 청년 2,573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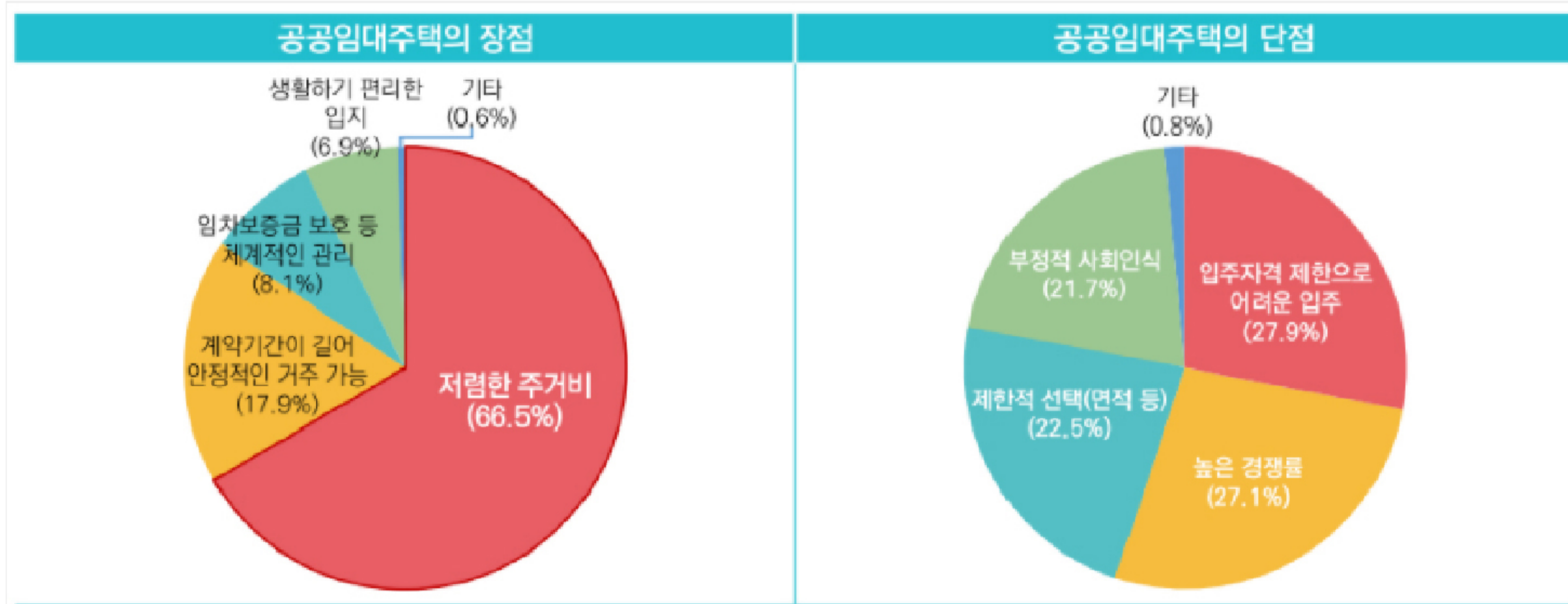
주: 무주택 청년 중 향후 10년 내 주택소유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1,476명을 대상으로 함.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 단점은 자격제한, 경쟁, 면적, 부정적 인식 등

2030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66.5%)'가 압도적이고, '계약기간이 길어 안정적 거주 가능(17.9%) > '임차보증금 보호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은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는데, '입주자격 제한으로 입주하기 어려움(27.9%)', '공급이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높음(27.1%)', '주변 환경이 좋지 않거나 면적 등 선택이 제한적(22.5%)', '민간임대보다 품질이 나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21.7%)' 등의 순으로 고르게 나타남

•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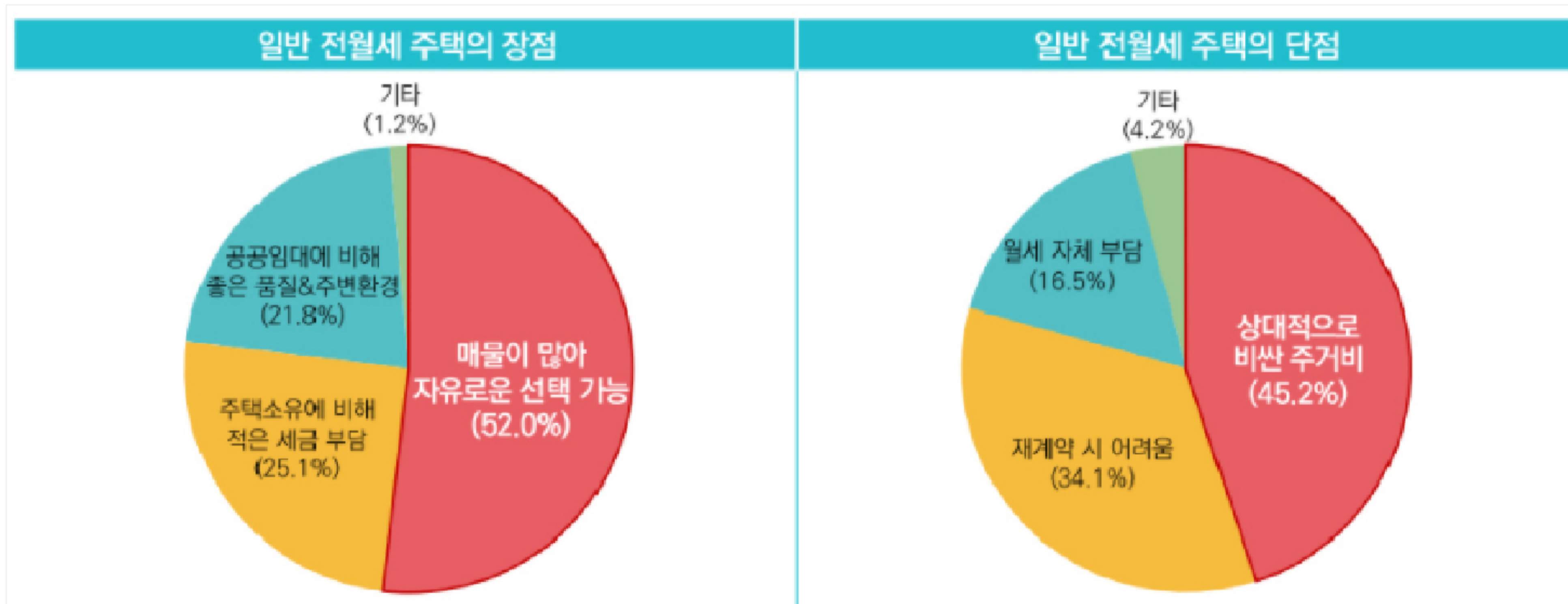


주: 2030 미혼 청년 3,009명을 대상으로 함.

일반 전월세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선택 가능', 단점 '비싼 주거비'

일반 전월세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매물이 많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52.0%)'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싼 주거비(45.2%)',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의 인상 부담과 이사준비(34.1%)', '월세 지불자체의 부담(16.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5]



주: 2030 미혼 청년 3,009명을 대상으로 함.

자가 주택 마련이 어려울 때, 일반 전월세와 공공임대를 약 6:4 비율로 선호하는 상황에서 일반 전월세 주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확대 공급이 청년 주거안정에 중요한 지점임을 확인

필요한 정부 주거정책은 '신규주택 공급 확대', 효과적인 정책은 '무주택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

2030 미혼 청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부 주거정책 분야는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3.90점)', '무주택 청년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비경감(3.79점)', '누구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3.71)' 순

정책효과가 높을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은 '주거비 경감', '공공임대주택공급', '신규주택 공급' 순

• [표 8]

구분	필요성	효과성
신규주택 공급 확대	3.90	3.44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도입 (이익공유형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	3.49	3.31
세입자 권리 강화	3.58	3.37

무주택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	3.79	3.62
누구나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3.71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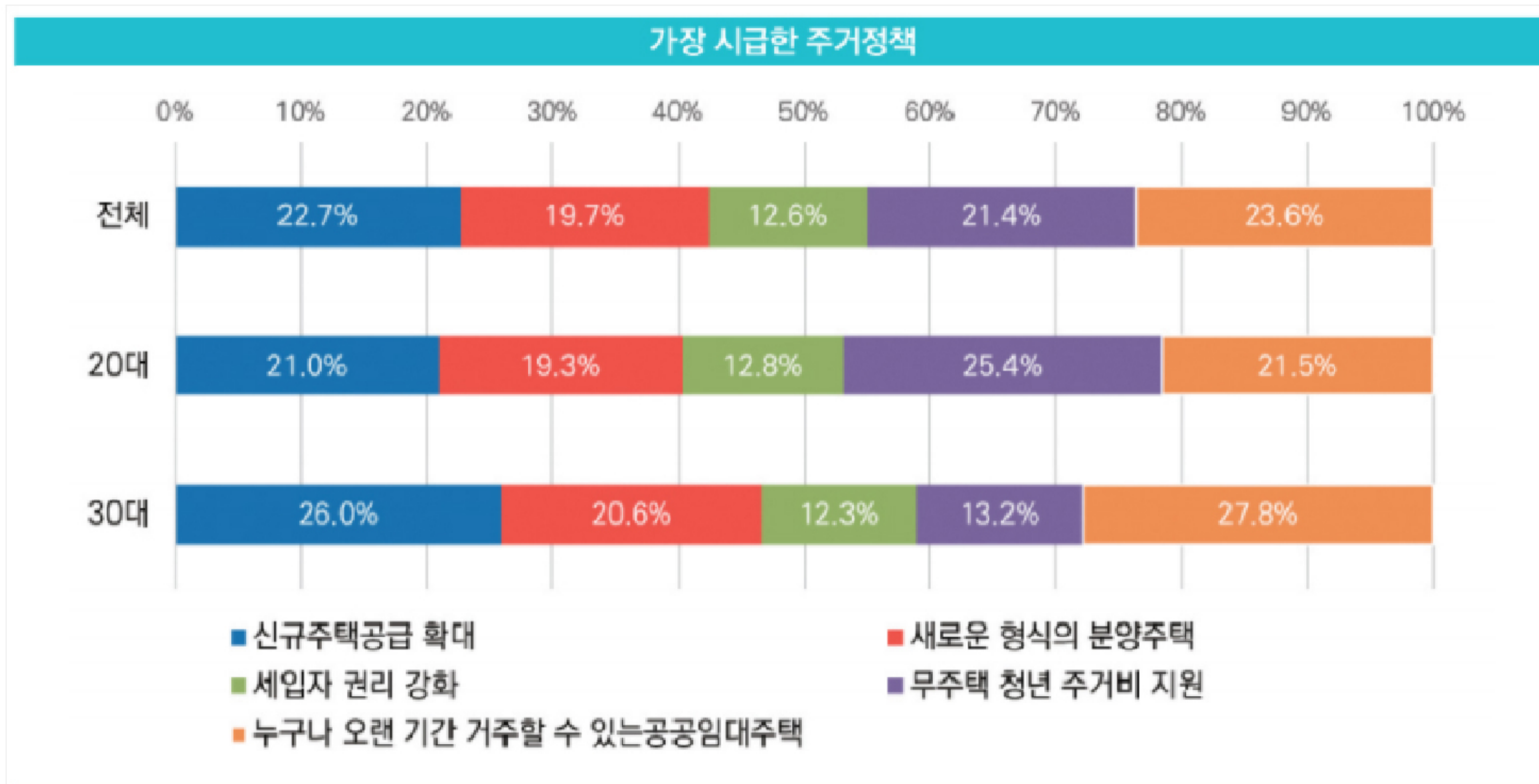
주1: 5점 척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높게 평가.
주2: 2030 미혼 청년 3,009명을 대상으로 함.

시급한 정부 주거정책은 공공임대 > 신규 주택공급 > 주거비 지원 > 새로운 분양주택 순

가장 시급한 정책은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는데 '누구나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3.6%)'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규주택공급확대(22.7%) 무주택청년 주거비 지원(21.4%)등의 순

- 미혼 청년 연령별로는 20대는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5.4%)'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30대는 '누구나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7.8%)'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0대 미혼 청년은 20대에 비해 '신규주택 공급 확대', '자가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도입'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림 4]



주: 2030 미혼 청년 3,009명을 대상으로 함.

○ 4. 시사점

미혼 청년은 독립 시 부모의 도움을 받고, 향후 주택 마련 가능성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중요

2030 미혼 청년의 2/3는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략적인 소득수준은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임

부모 독립 청년은 아파트 이외(74.7%),보증부월세(43.8%)로 거주하고, 현재의 거쳐 마련 시에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독립(42.1%)했고, 보증부월세 보증금의 60.9%를 부모로부터 지원받음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중요: 부모세대의 소득·자산 격차가 자녀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 → 부모 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 마련하도록 지원 필요

- 자신의 필요와 부모의 지원 가능성이 결합하여 주택소유 가능성을 높이고, 반대로 부모지원 가능성이 낮을때 주택소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인식

자가 마련 한계 시 대안으로 민감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경합 가능성과 정책 개선

자가 마련이 어려울 때 대안으로 일반 전월세와 공공임대가 약 6:4의 비중으로 응답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저렴한 주거비, 장기거주 가능한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지점. 단, 까다로운 자격요건, 물량부족, 좁은 면적, 부정적 사회인식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공공임대, 자가마련,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요구가 공존

시급히 시행될 것 희망하는 정책으로 공공임대, 신규주택공급,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주거비 지원이 모두 상당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대두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시도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

미혼 청년의 주거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미혼 청년의 주거 상황과 인식은 주거뿐 아니라 취업, 소득, 사회적 건강, 부모의 경제적 수준 등 다차원적인 측면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 필요

지속적인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 및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정책 대상과 정책 수요 파악 등에 활용할 필요

출처: 국토이슈 리포트_박미선 주거정책 연구센터장외

알기쉬운정책용어



법제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8일
(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악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구상

악물의 영향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가능

15일
(화)



「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이용자 보호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25일
(금)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근거 마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점제 운영 가능

25일
(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근거 마련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설정

성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 | Fax. 033-249-5274

Copyright(c)2022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